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윤석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46
----------	-------

발의년월일 : 2020. 9. 7.
발의자 : 윤석진 의원 등 23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음.
-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을 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송부대상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 결의문(안) “별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